

專 門 醫 修 鍊 規 程 < 全 文 >

政府는 2月 17日 字로 「專門醫修鍊規程」을 대통령령 第6075號로 公布, 이날부터 施行에 들어갔다. 全文 第17條부칙으로 된 이 規程은 醫療法 第36條 第1항의 規程에 의한 專門醫 資格인정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修鍊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程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 全文 內容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이 령은 의료법 제3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련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각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3. 「레지던트」라 함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전문과목중 1과목을 전공적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4. 「수련병원」이라 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수련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3 조 (수련)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일정한 수련병원에서 이 령의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수련기간) ①인턴의 수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수련년도는 4월 1일부터 다음년도 3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련병원의장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월 1일부터 다음년도 9월 30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 5 조 (수련병원의 기준) ①수련병원은 적어도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마취과·방사선과 및 임상

병리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과에 전속전문의를 있어야 하며 그 규모·과목별 시설·진료실적 기타 인적·물적 시설설비가 인턴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구분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수련병원의 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수련병원의 지정)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련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련의의 정원) 수련병원별·전문과목별 수련의의정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 8 조 (수련과정) 수련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수련의 제도심의위원회) ①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수련 병원의 기준·수련의의 정원·수련과정 기타 수련의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수련의 제도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1인은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수련의 제도에 관여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보건사회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련병원의 장의 권한) ① 수련병원의장은 정원의 범위안에서 수련의를 임용하고 수련의의수련(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 수련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수련병원의 장은 수련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련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수련규정 및 기록의 비치) 수련병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제정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이외의 서류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수련에 관한 규정
2. 수련의 수련기록
3. 각종 회의록
4. 학술집회기록

제13조(수련의의 임용보고) 수련병원의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4월말일까지 수련의 임용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파견수련)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레지던트의 수련과정의 일부로서 그 수련기간중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지정하는 진료업무를 행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수련의를 파견하여 수련하게 할 것을 수

련병원의 장에게 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수련의 명을 받은 수련병원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수련병원의 장은 그 병원에 배정된 파견수련의의 10분의1이내에서 그 파견수련의 명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련의로서 파견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자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련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 보건사회부장관은 수련병의 원장에게 수련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겸직금지) 수련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인턴레지던트는 이 령에 의한 수련의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인턴 레지던트의 수련을 위한 병원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1972년 6월말까지 이 령에 의한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의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에 관여하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